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2-88호**  
**2022. 12. 16.(금)**

## 차 례

### 조 례(16)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24호) ..... 1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25호) ... 6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26호) ..... 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27호) ..... 3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28호) ... 36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29호) ..... 3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30호) ..... 4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조례 제1631호) .. 4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조례 제1632호) ..... 6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33호) ..... 64
-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조례 제1634호) ..... 66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35호) .. 7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36호) .. 76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37호) .. 7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38호) ..... 84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39호) ..... 86

## 차 례

### 규 칙(3)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44호) .... 8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45호) ..... 106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46호) ..... 109

### 훈 령(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76호) ..... 115

### 고 시(2)

-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고시 제2022-103호) ..... 126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2-104호) ..... 127

### 공 고(5)

-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2-1189호) ..... 128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22-1191호) ..... 131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2-1194호) ..... 132
- 대철약수터 폐쇄 공고(공고 제2022-1201호) ..... 138
-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공고(공고 제2022-1204호) ..... 139

### 입법예고(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1192호) 14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1193호) · 15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1203호) · 164

### 행정예고(1)

- 중리전통시장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제2022-1207호) ..... 194

공									
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24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로 한다.

제4조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2”를 “제3조의2”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의3제2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1조제3항제3호 중 “「민법」 제777조”를 “「민법」 제777조”로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따라”를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부강의 등을 마친”을 “해당 사항을 안”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1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의 제3호 중 “10만원”을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나목 중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각각”을 “경우에는”으로,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를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로 하고, 같은 비고 다목, 라목을 각각 라목, 마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 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제1호 가목 중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2.5.1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2.6.2. 시행)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6조 삭제).
- 나. 지방의회의 업무 및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대상 범위를 규정함(제10조의3제3호).
- 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함(별표 1, 별표 2).
- 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등 이해충돌 방지 관련 서식을 삭제함(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 마.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제1조, 제10조의2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25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제3조 관련)

지급기준	월정수당
월	2,961,500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 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 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된 월정수당 지급액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함(별표 2).
  - (당초) 2,161,500원 ⇒ (변경) 2,961,500원 / 800,000원(37퍼센트 인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26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소속기관”을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국장·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실장·과장의 직급, 본청의 실장·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안전국,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도시건설국을 둔다.

제4조(행정안전국)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정보과, 토지정책과를 둔다.

제5조(복지문화국)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친화과, 문화관광체육과를 둔다.

제5조의2(경제환경국) 경제환경국에 경제과, 에너지산업과, 환경과, 교통과, 위생과를 둔다.

제6조(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공공청사과, 건설과, 도시활력과를 둔다.

제7조 중 “실·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직속기관(보건소)”을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10조·제14조 및 「치매관리법」 제1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제14조 및 「치매관리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11조”를 “「지역보건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4조”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사업소(복합문화센터)”를 “사업소”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의 제목 “(센터장)”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을 “평생학습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센터장은 문화콘텐츠 개발”을 “원장은 평생학습 추진”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하부행정기관(동)”을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과 사무소의”를 “동의”로 한다.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제15조 중 “통·반장”을 “통·반”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대덕구구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실·국·단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실·국·단별”을 “실·국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실·국·단별”을 “실·국별”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실·국·단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본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실·단·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소관부서란 중 “운영지원과”를 “총무과”로 하고 “공동체과”를 “에너지산업과”로 하며 “토지정보과”를 “토지정책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

제8조 중 “실·단·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실·단·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자치분권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제1호 중 “운영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1호라목 중 “실·단·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의 구분란 중 “실·과·단장실”을 “실장·과장실”로,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공동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공동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공동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공동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공동체과장”을 “에너지산업과장”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미래교육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25>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미래교육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자치분권과장, 미래교육과장, 여성가족과장”을 “자치행정과장,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27>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28>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미래교육과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29>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 미래교육과장, 기획홍보실장”을 “행정안전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홍보실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미래교육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31>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32>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33>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문화정책팀장”을 “축제팀장”으로 한다.

<34>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35>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36>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3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38>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팀장”을 “노인정책팀장”으로 한다.

<39>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40>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4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42>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을 “복지문화국장,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43>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44>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45>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 기획홍보실장, 여성가족과장”을 “복지문화국장, 기획홍보실장,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46>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47>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48>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49>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을 “복지문화국장,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50>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5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52>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5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54>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55>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56>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10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에너지산업과장”으로 한다.

<57>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58>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59>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에너지산업과장”으로 한다.

<6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6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62>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후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기후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63>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기후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64>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기후경제국장, 기후환경과장”을 “경제환경국장, 환경

과장”으로 한다.

<65>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실·과·단장(사업소포함) 및 복합문화센터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에너지과학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66>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후경제국장, 기획홍보실장, 기후환경과장, 주택정책과장”을 “경제환경국장, 기획홍보실장, 환경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에너지과학과장”을 “에너지산업과장”으로 한다.

<6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에너지과학과장”을 “에너지산업과장”으로 한다.

<68>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69>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70>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71>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7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73>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도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 도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74>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75>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7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7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도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별표 2의 교육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미래교육과”를 “자치행정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자치분권과”를 “민원정보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일자리경제과”를 “에너지산업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일자리경제과”를 각각 “에너지산업과”로, 환경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기후환경과”를 각각 “환경과”로, 고용노동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일자리경제과”를 “경제과”로, 국토교통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주택정책과”를 “건축과”로, 금융위원회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일자리경제과”를 “경제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가목·나목·다목의 총괄조정관란 및 통제관란 중 “안전

도시국장”을 각각 “행정안전국장”으로, 실무반란의 “환경과, 청소위생과”를 각각 “환경과”로, “도시재생과, 건축과, 건설과”를 각각 “건축과, 건설과, 도시활력과”로, “기획감사실”을 각각 “기획홍보실”로 한다.

별표 5의 1. 편성기준의 총괄조정관란 중 “안전도시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실무반란의 “환경과, 청소위생과”를 “환경과”로, “도시재생과, 건축과, 건설과”를 “건축과, 건설과, 도시활력과”로,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실무반란의 현장지원반란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78>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79>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택정책과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하고, “주택복지팀장”을 “주택관리팀장”으로 한다.

<8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주택정책과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한다.

<8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주택정책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82>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정책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택정책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8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84>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복합문화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복합문화센터장(이하 ”센터장”을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센터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센터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센터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센터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센터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장”을 “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복합문화센터장”을 각각 “평생학습원장”으로 한다.

<85>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과·단장급”을 “실장·과장급”으로 한다.

<86>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행정지원국(동 포함), 공동체복지국”을 “행정안전국(동 포함), 복지문화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복합문화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기후경제국”을 “경제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시안전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 본청 실장·국장의 분장사무(제7조 관련)

※엑셀파일 별첨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1조제2항 관련)**

명칭	위치
평생학습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 64 (신탄진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여 합리적  
· 능동적인 조직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행정지원국”을 “행정안전국”으로, “공동체복지국”을 “복지문화국”으로, “기후경제국”을 “경제환경국”으로, “도시안전국”을 “도시건설국”으로 명칭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함(제3조).
- 나. 행정안전국,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도시건설국에 설치하는 과를 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다. “복합문화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함(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별표 3 신설).
- 라. 실·국 분장사무를 정비함(별표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2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91명”을 “81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71명”을 “79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명”을 “2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  
 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등급별란 중 “가급”을 “5급(상당)”으로, “나급”을 “6급(상  
 당)”으로 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16					
정 무 직	소계	1					
	구청장	1	1				
일 반 직	소계	813					
	3급	1	1				
	4급	6	4		1	1	
	5급	48	27	3	4	2	12
	6급 이하	758					
별 정 직	소계	2					
	6급 상당	1	1				
	7급 상당	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행정기구 및 사무조정에 따라 원활한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를 “791명”에서 “816명”으로 조정함(제2조).
-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2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우리 구 홍보 매체를 활용한 사업 시행 시 필요한 경우 분야별 특성에 맞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여 공모전 등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구민의 활발한 구정참여를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홍보 매체를 활용한 사업 시행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4항 신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29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통장·반장의 임명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통  
장·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해촉”을 “해임”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통장 등의 임명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통장·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조문을 정비함(제5조).
- 나. 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4조제4항 신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3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 10억원 이상의 재산

2. 처분: 10억원 이상의 재산

③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2. 처분: 2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제12조의 제목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관리계획서)”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리계획서”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로 한다.

제25조 중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를 “영 제32조제3항”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4항) 제2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

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제7항”을 “영 제14조제8항”으로, “분할납부하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47조 중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요율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정·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 가격과 면적 기준을 신설함(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1) 재산 가격: 취득 10억원 이상, 처분 10억원 이상
  - 2) 토지 면적: 취득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 2천제곱미터 이상
- 나.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주거용으로 계약된 공유 재산 사용료·대부료 산정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함(제27조제4항).
-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3조제2항, 제25조 및 제34조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31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담당업무 과장
  2. 지역의 특산물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 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구가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물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구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구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구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구나 민간업체의 온라인 쇼핑몰 또는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의 선정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모 접수 개시일 14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

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담당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사람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 중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8조(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1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제정, 2023.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904호, 2022. 9. 13. 제정, 2023. 1. 1.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할 사항, 답례품의 선정·절차 및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제공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다.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정함(제7조).
- 라. 기금의 설치, 재원, 관리·운영, 사용목적 및 기금운용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마.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바. 지금 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9조 및 제20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32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역 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대덕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

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지역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다.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및 제6조).
- 라. 지역 예술인의 참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3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구가 주최하는 축제기간 중 관람객의 수송을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덕구가 주최하는 축제 행사 시 교통문제를 해결하여,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로 셔틀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구가 주최하는 축제기간 중 관람객의 수송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3항 신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3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진흥 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법 제48조제4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1. 관광분야 인재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관광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3.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운영사업
4.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5. 시티투어 코스 개발 및 운영
6. 그 밖에 대덕구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위원회) 구청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광진흥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환경·법률·언론 등 관련 전문가
3. 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4. 관광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
5. 그 밖에 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관광진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

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관광진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위원회로 본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관광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관광진흥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나. 관광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부터 제11조까지).
- 다.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35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을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희생·공헌자”라 함은”을 ““희생·공헌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을 ““국가보훈대상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라 함은”을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훈단체”라 함은”을 ““보훈단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참전유공자”라 함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참전 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의4제2호 중 “제4조제1항제3호·제5호·제7호·제8호·제11호·제12호·제13호”를 “제4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11호·제12호·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에 전상군경(戰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을 포함하여 규정함(제6조의4제2호).
- 나. 그 밖에 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반영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제1조 및 제2조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36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자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람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향군인회“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책 무)”를 “(책무)”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을 “사업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재향군인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제2조제1호, 제5조제5호 및 제6조).
- 나. 재향군인회의 지원 대상에 운영비 규정을 추가하여 정비함(제5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37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경제

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 중 “경비원”을 각각 “공동주택 노동자”로 하며, 같은 호 중 “샤워시설”을 “샤워시설, 냉난방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 관리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경비원”을 “공동주택 노동자”로, “증진을”을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비원의”를 “공동주택 노동자의”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입주자 등”으로, “경비원에게”를 “공동주택 노동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비원”을 “공동주택 노동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비원은”을 “공동주택 노동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를 “공동주택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으로,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책”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 및 고용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비원이”를 “공동주택 노동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

고, 같은 조 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3호) 중 “경비원”을 “공동주택 노동자”로 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
3.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4.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
5. 자치관리 및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를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실태, 고용조건, 노동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권보호”를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 1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조례의 대상인 ‘경비원’에서 ‘공동주택 노동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범위를 인권보호와 증진 및 고용안정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관리자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지역 사회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 나. 제2조제2호 “경비원”의 용어 정의를 “공동주택 노동자”의 정의로 개정함(제2조).
- 다. 기본시설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예산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제5조).
- 라. 공동주택 노동자가 폭언, 폭행,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제6조).
- 마.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가함(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3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경관지구란의 제1호다목 중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을 “5층 미만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시행(2021.12.1.)에 따라 조례로 위  
임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경관지구내 건축물 중 경관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을  
변경함(별표 2).
- 시가지 경관지구 건축물 → 5층 미만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3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  
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  
진단·분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를 “(범죄예방 도  
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에 범죄예방 진단·분석 정보를 활용하는 등 대덕구 관할 경찰서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대덕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 진단·분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2항 신설).
-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운영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전문가의 위원 위촉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3항·제4항 신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44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장과 실·과·단장의 직급, 소속기관 및”을 “국장·실장·과장의 직급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으로, “장 직급과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를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 중 “국·실장은 부구청장을, 과·단장”을 “국장·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행정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정과장·세원관리과장·민원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복지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생활지원과장·노인장애인과장·가족친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의2(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에너지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도시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공동주택과장·공공청사과장·건설과장·도시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평생학습원장 밑에 평생학습과장, 도서관운영과장을 둔다.

② 평생학습과장, 도서관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 중 “센터장”을 “평생학습과장, 도서관운영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분장사무란 중 “7. 통·반장 위촉·해촉 및 통·반장회의 운영”을 “7. 통장·반장 임명·해임 및 통장·반장 회의 운영”으로 하고, “9.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9.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국장, 실·과·단장”을 “국장·실장·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복합문화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국·실·과·단장”을 “국장·실장·과장”으로, “국·실·단·과장”을 “국장·실장·과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단·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실·단·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을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주택정책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단·직속기관”을 “실·과·직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실·과·단·직속기관 및사업소”를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실·과·단·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간의”을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간의”으로, “실·과·단·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를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실·과·단·직속기관”을 각각 “실·과·직속기관”으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실·과·단·직속기관”을 “실·과·직속기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실·단·과장”을 “실장·과장”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직위란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도시안전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4. 작성자 인적사항란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실·과·단장급”을 “실장·과장급”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20조 중 “실·단·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단·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실·단·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감사평가실”을 “감사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사평가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감사평가실”을 “감사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감사평가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평가실”을 “감사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평가실”을 “감사실”로, “회계정보과”를 “민원정보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사평가실”을 “감사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회계정보과”를 “민원정보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사평가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정보과장”을 “민원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평가실”을 “감사실”로, “회계정보과”를 “민원정보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사평가실”을 “감사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감사평가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회계정보과”를 “민원정보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평가실장”을 각각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평가실”을 “감사실”로, “회계정보과”를 “민원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사평가실”을 “감사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감사평가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감사평가실”을 “감사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감사평가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회계정보과”를 “민원정보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감사평가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감사평가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단장”(사업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을 “실장·과장(사업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운영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

제24조 중 “운영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운영지원과”를 “총무과”로 하고, 제2호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치분권과”를 “민원정보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아래쪽 제3호 중 “운영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국·과·단”을 “실·국·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실장·국장·과장·단장”을 “실장·국장·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운영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1. 승용차량 기준정수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란 중 “복합문화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실·단·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관수자란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정보과장”으로 하고, “실·단·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단·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21>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결재란 중 “실·과·단장”을 각각 “실장·과장”으로 한다.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운영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운영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실·과·

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하고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5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과장, 도서관장(신탄진, 안산, 송촌)”을 “소속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지원국장 및 운영지원과장”을 “행정안전국장 및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총괄채권관리관칭의 본청란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분임징수관란 중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하며, 분임재무관란 중 “회계정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하고,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일상경비출납원의 본청란 중 “실·과·단장”을 각각 “실장·과장”으로 하며,

통합지출관의 본청란 중 “회계정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의 본청란 중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하며, 분임징수관의 제1관서(동 제외)란 중 “보건행정과장, 건강정책과장, 도서관장(신탄진, 안산, 송촌)”을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장”으로, 분임재무관의 제1관서(동 제외)란 중 “보건행정과장, 건강정책과장, 도서관장(신탄진, 안산, 송촌)”을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장”으로, 일상경비출납원의 제1관서(동 제외)란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별표 2의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복합문화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25>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공동체과 및 일자리경제과”를 “복지정책과 및 경제과”로 한다.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정보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2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업무주관실·과·단장”을 “업무주관 실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업무주관실·단·과장”을 각각 “업무주관 실장·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관실·단·과장”을 “주관 실장·과장”으로 하며, 제6호 중 “업무주관실·과·단장”을 “업무주관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업무주관실·과·단장”을 “업무주관 실장·과장”으로 한다.

<2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29>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부서명란 중 “일자리경제과”를 “경제과”로 하고 “기후환경과”를 “환경과”로 한다.

<3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장(이하 ”센터장”을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센터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센터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센터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센터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 본청 실장·과장의 분장사무(제9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별표 3] 평생학습원장의 분장사무(제14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별표] 사무 진결 기준(제4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별지 1>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조례에서 행정기구 및 사무의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과의 명칭을 신설·변경, 삭제함(제1조부터 제2조까지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나. 국 소속 과장의 직급을 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다. 복합문화센터를 평생습원으로 변경하고, 장의 직급을 정함(제12조 및 제13조).
- 라. 실·과 및 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정비함(별표 1 및 별표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4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조례에서 행정수요 발생으로 일부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정원의 증원: 정원 791명 → 816명(25명 증가)

2) 일반직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 4급: 5명 → 6명(1명 증가)

▶ 5급: 47명 → 48명(1명 증가)

▶ 6급: 187명 → 191명(4명 증가)

▶ 7급: 239명 → 251명(12명 증가)

▶ 8급: 226명 → 225명(1명 감소)

▶ 9급: 83명 → 91명(8명 증가)

3)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

▶ 본청 512명 → 528명(16명 증가)

▶ 의회사무과 20명 → 22명(2명 증가)

▶ 직속기관 53명 → 54명(1명 증가)

▶ 사업소 30명 → 36명(6명 증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46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통장·반장의 임명 및 해임 등) ① 통장·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동장이 임명한다.

1. 통장은 해당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② 통장·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1. 관할 통·반 외의 지역으로 진출한 경우
  2.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민사·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직무수행이 현저히 불성실하거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통장·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④ 동장은 통장의 임명 등 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제3조의 제목“(통장 임기만료 등의 공고 및 재공고)”를“(통장의 모집공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장 위촉사유”를 “통장의 임명 사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촉되었을 때에는 해촉된”을 “제2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었을 때에는 해임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촉절차”를 “임



명절차”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고방법”을 “공고 방법”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한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등록신청서”를 “등록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작성 보관”을 “작성·보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통장의 위촉절차)”를“(통장의 임명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장의 위촉은”을 “통장은 제3조에 따른”으로,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통장임명심의위원회”로, “위촉한다”를 “통장이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제3조제3항”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를 “지원자”로, “위원회”를 “제8조에 따른”으로, “위촉 할”을 “임명할”로 한다.

제6조의 제목“(통장위촉심의위원회 구성)”을“(통장임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으로 하며”를 “호선하며”로 한다.

제7조 중 “통장 위촉대상자”를 “통장임명대상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과반수이상”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장위촉대상자”를 “통장임명대상자”로, “심사표에 의하여 적임자 중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한 점수”를 “심사표의 배점 중 60점

이상(100점 기준)의 득점자(최고·최저 점수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인 이상의 동점자”를 “동점자”로, “자료”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9조의 제목“(통장·반장 위촉 통지 및 위촉장 수여)”를“(통장·반장의 임명 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장·반장 위촉사항을”을 “통장·반장의 임명 사항을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로, “개별통지 하여야”를 “개별통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장·반장 위촉시 위촉장”을 “통장·반장의 임명장”으로, “의하며”를 “따르고”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에 규정한”을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없”을 “해임된 경우에는 지체 없”으로 한다.

제12조 중 “위촉”을 “임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3호 “위촉절차”를 “임명절차”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위촉장”을 “임명장”으로 하고, “위촉기간”을 “임명기간”으로 하며, 본문 중 “위촉”을 “임명”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위촉·해촉”을 “임명·해임”으로 하고, “위촉일자”를 “임명일자”로 하며, “해촉일자”를 “해임일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위촉 기간”을 “임명 일자”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위촉일자”를 “임명일자”로 하고, “최초위촉일자”를 “최초임명일자”로 하며, “재위촉일자”를 “재임명일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 및 해촉된 통장·반장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및 해임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된 통장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통장·반장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목적규정을 정비함(제1조).
- 나. 통장·반장의 임명, 해임, 임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 신설).
- 다. “위촉”, “해촉”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임명”, “해임”으로 변경함(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2년 1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76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직렬별 정원을 정함”을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직급별 정원)”을“(직급별·직렬별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직렬별”을 각각 “직급별·직렬별”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목 “동행정복지센터 직렬별 정원”을 “동행정복지센터 직급별·직렬별 정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 “운영지원과”를 “총무과”로 하고, “기후환경과”를 “환경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내부위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비고란 중 “토지정보과”를 “토지정책과”로, “사회복지과”를 “생활지원과”로, “여성가족과”를 “가족친화과”로, “주택정책과”를 “건축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보발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 중 “실·과·단”를 각각 “실·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4호다목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대덕구청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호 중 “실·과·단”을 각각 “실·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계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별표의 통계통제관란 중 “과장”을 “주무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속직원(실·과·단장급)”을 “소속직원(실장·과장급)”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원경찰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 제9조제3항, 제11조,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 중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위협의회 방위지원본부 설치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운영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자치분권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운영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운영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하고, “실·과·단”를 “실·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區廳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운영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홍보실장, 운영지원과장”을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지원팀장”을 “총무팀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운영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운영지원과”를 “총무과”로 하고 “기후환경과”를 “환경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운영지원과장, 기후환경과장”을 “행정안전국장, 총무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당면주요시책에 대한 책임제 실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실·과·단”을 각각 “실·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실·과·단장”을 각각 “실장·과장”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하고,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환경순찰반설치및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치분권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자치분권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주무실·과·단”을 “주무 실·과”로 한다.

제8조 제목 중 “주무 실·과·단”을 “주무 실·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하며, “자치분권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소관부서란 중 “세무과”를 “세원관리과”로 하고, “토지정보과”를 “토지정책과”로 한다.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7조제1호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정보과장”으로 하고, “사업소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각각 “민원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정보과장”으로 한다.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사전심사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민원사무명란 중 “토지정보과”를 “토지정책과”로, “에너지과 학과”를 “에너지산업과”로, “일자리경제과”를 “경제과”로,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기후환경과”를 “환경과”로, “주택정책과”를 “건축과”로 한다.

<24> 대전광역시대덕구종합민원실공무원복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3항의 “민원봉사과장”을 각각 “민원정보과장”으로 한다.

<25>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토지정보과장”을 “토지정책과장”으로 한다.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각각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운영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을 “총무과장,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27>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관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후면 본문 중 소지자의 임무 제2호 중 “일자리경제과”를 “에너지산업과”로 한다.

<28>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주택정책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하고,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29>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조물 등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별지 1>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별표 1] 구 본청 보좌·보조기관 직급별·직렬별 정원(제2조제1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별표 2] 의회사무과 직급별·직렬별 정원(제2조제2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별표 3] 직속기관(보건소) 직급별·직렬별 정원(제2조제3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별표 4] 사업소(평생학습원) 직급별·직렬별 정원(제2조제4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부서별·직종별 공무원 정원(제7조 관련)

부서별	직종별	계	단순노무원	기술인부	공사인부	환경관리요원	행정실무원	청원경찰		
								소계	경비	단속감시
총 계		213	38	14	28	89	36	8	5	3
본 청		181	30	13	28	89	13	8	5	3
기획홍보실		2	2 구청홍보자료수집 1 구청전략홍보사무 1							
총 무 과		14	10 취사인부 4 비서실 민원처리 보조 1 비서실 및 부속실운영지원 3 보통관리 시스템 운영 1 4대보험 및 상시학습업무지원 1	1 영양사				3	3	
안전총괄과		1	1 민방위시설관리							
세원관리과		1		1 채납정수						
민원정보과		3	3 기록물관리 2 가족관계등록관리 1							
토지정책과		2	2 도로별주소관리 1 개발공시지가조사 보조 1							
생활지원과		8					8 통합사례관리사 5 의료급여사례관리사 3			
노인장애인과		2	2 장애인복지시설관리 1 노인일자리관리 1							
가족친화과		5					5 드림스타트 4 특화분야교사 1			
문화관광체육과		1	1 체육시설관리							
환경과		92		2 불법투기단속	1 재활용인부	89 환경관리요원				
교통과		4	4 주차장시설유지관리 2 불법주정차단속업무지원 2							
위생과		1	1 식품위생관리							
도시계획과		3						3		3
공원녹지과		13	1 민원안내 및 전사설 관리			10 공원녹지관리		2	2	
건축과		4		4 광고물정비 3 위반건축물정비 1						
공공청사과		4	2 청사실내청소		2 청사실외청소					
건설과		21	1 지하수검침	5 노점상단속	15 도로보수 8 하수도보수 7					
의회사무과		2	1 의원사무실 의전 및 사무보조	1 윤활기관리						
보건소		17					17			
보건행정과		1					1 결핵관리사업 1			
건강정책과		16					16 통합건강증진사업 15 예방접종등록센터 1			
평생학습원		10	4				6			
도서관운영과		10	4 도서정리				6 개관시간연장사업			
동		3	3							
송촌동		2	2 송운문화의집관리							
신탄진동		1	1 신탄문화의집관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라 정원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배정함.

□ 주요내용

가. 규정에 맞게 “직급별 정원“을 ”직급별·직렬별 정원“으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분청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배정함(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 1) 분청: 512명 → 528명(16명 증가)
- 2) 의회사무과: 20명 → 22명(2명 증가)
- 3) 직속기관: 53명 → 54명(1명 증가)
- 4) 사업소: 30명 → 36명(6명 증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2-103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준점 종류	기준점 번호	전		후		비 고
		평면직각중형선좌표		평면직각중형선좌표		
		X 좌 표	Y 좌 표	X좌표	Y좌표	
도근점	2951			427185.35	238913.44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52			427228.58	239011.79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53			427233.77	239090.06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54			427234.55	239142.09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55			427231.44	239228.83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56			427107.63	239238.07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57			427115.11	239138.54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58			427096.66	239075.50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59			427098.96	239038.12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60			427167.23	239027.65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61			427129.00	238940.00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62			427097.42	238957.20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63			426981.27	239020.83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64			426988.73	239097.79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65			426990.96	239144.97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66			426993.88	239233.91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67			426875.33	239245.34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68			426880.74	239146.39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69			426872.91	239081.58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70			426691.00	239101.78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71			426705.67	239165.25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72			426751.30	239240.43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79			427835.53	236714.85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80			427955.84	236649.76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81			428097.85	236573.85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982			428089.29	236443.46	세계좌표(신설)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소 제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및 문평동 일원				
측 량 년 월 일		2022년 11월 16일, 12월 7일				
측 량 성 과 보 관 장 소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끝.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석봉동 191-7	석봉북로24번길 12	2022. 12. 16.	건물신축	석봉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2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상서동 26	상서로 64	2022. 12. 16.	건물신축	행정구역명(상서동)을 반영
평촌동 58	평촌4길 20	2022. 12. 16.	건물신축	행정구역명(평촌동)을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신대동, 연축동 일원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행복도시 연결도로(경부고속도로 회덕IC 신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관계인 포함)의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 협의가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시행지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행복도시 연결도로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신설) 건설공사	2021년 ~ 2025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연축동 일원	회덕IC 신설 등 L=0.8km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

※ 사업시행자의 주소

- 본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울곡동)
- 남부도로개량사업단: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54, 8층

2. 공고기간: 2022. 12. 16. ~ 2022. 12. 30. (15일간)

3. 공고장소: 대덕구청(건설과)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등

4. 공고내용

가. 공고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나. 사업의 인정:

- 1) 도로구역 결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701호(2021.05.18.)
- 2) 편입토지 세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67호(2022.05.25.)
- 다. 송달 내용: 「행복도시 연결도로(경부고속도로 회덕IC 신설)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요청 및 수용 예정 안내
- 라. 공고사유: 「행복도시 연결도로(경부고속도로 회덕IC 신설)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미등기 또는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해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그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 처리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함.
5. 공시송달 내역: 별첨 내역 참조
6. 계약체결(보상협의) 기한: 2022. 12. 30. 까지
7. 계약체결장소: 본 사업 현장사무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411-35 / ☎042-623-6660
8. 보상금 지급 절차 및 방법 : 소유권 이전 후 보상금 계좌이체
9. 보상협의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가. 보통예금통장,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나.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각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부동산매도용, 매수자 : 국토교통부)  
라.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1부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042-608-5212) 및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발사업단(☎063-712-5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 □ 공시송달 내역

연번	소재지	지목	편 입		소유자			관계인		공시송달유사	비고
			지번	지적(㎡)	지분	성 명	등기부등본상 주소	성 명	등기부등본상 주소		
1	대전 대덕구 신대동	답	334-3	1,475	1/1	이기*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로 83, 10*동10*호(월평동, 다모아아파트)	이종*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448, 30*동 60*호(전민동, 엑스포아파트)	거소불명	근저당권
2	대전 대덕구 신대동	전	350-13	178	19/100	임영*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지천로18*번길 4*	박희*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로40, 40*동 210*호(상대동, 도안휴먼시아4단지)	거소불명	가처분
3	대전 대덕구 신대동	전	350-16	1,409	19/100	임영*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지천로18*번길 4*	박희*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로40, 40*동 210*호(상대동, 도안휴먼시아4단지)	거소불명	가처분
4	대전 대덕구 신대동	임	산5-9	861	141/1000	임영*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지천로18*번길 4*	박희*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로40, 40*동 210*호(상대동, 도안휴먼시아4단지)	거소불명	가처분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196 외 1필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하는 사항

위 치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목상동 196번지	309㎡	21㎡	이○우	동의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주택정책과(☎042-608-5152)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본부과, 압류예고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고
- 공고(의견제출) 기간: 2022. 12. 16. ~ 2022. 12. 29.(14일간)
- 기타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사전부과 대상자는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장애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이 압류(대

체)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대덕구청 사회복지과(☎042-608-6805, 68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공시 송달 명단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3, 1**동 5**호(신탄진동,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1단지)	11주01**	2022-11-03 05:03:33	신탄진동 771	2022.11.14	2022.11.16	폐문부재
2	주식회사 한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44번길 16, 5**호(송촌동)	49로60**	2022-10-24 15:19:54	송촌동 501-3	2022.11.14	2022.11.16	폐문부재
3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200, 101동 7**호(평촌동, 행복한마을아파트)	324루82**	2022-10-26 01:18:41	덕암동 19-1	2022.11.14	2022.11.16	폐문부재
4	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종리동로3번길 1*-1*, 1층(종리동)	346087**	2022-10-26 10:26:18	종리동 462	2022.11.14	2022.11.16	폐문부재
5	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3, 111동 31**호(신탄진동,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1단지)	45로51**	2022-10-26 18:49:09	신탄진동 771	2022.11.14	2022.11.16	폐문부재
6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97번길 79, 101동 10**호(읍내동, 백송아파트)	195마91**	2022-10-26 20:05:46	송촌동 525	2022.11.14	2022.11.16	폐문부재
7	최**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4**~4(대성동)	36로91**	2022-10-20 13:51:00	신상로 65	2022.11.14	2022.11.16	수취인불명
8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3, 104동 12**호(신탄진동,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1단지)	63오70**	2022-10-27 12:33:14	신탄진동 118-5	2022.11.14	2022.11.16	폐문부재
9	백**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2*-2*	40마90**	2022-10-29 11:15:47	미호동 57-3	2022.11.14	2022.11.21	폐문부재
10	강**	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 138, 203동 1**호(용운동, 주공고층아파트)	80누69**	2022-10-30 16:01:50	비래동 3-2	2022.11.14	2022.11.22	폐문부재
11	강**	대전광역시 대덕구 흥도로 1**, 3층(종리동)	15도60**	2022-10-30 16:04:00	비래동 4-11	2022.11.14	2022.11.16	폐문부재
12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6, 510동 1**2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81모04**	2022-11-02 16:49:31	송촌동 494-1	2022.11.14	2022.11.16	폐문부재
13	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56, 909동 6**호(노은동, 열매마을아파트9단지)	24주64**	2022-11-03 09:05:20	신일동 1684-39	2022.11.14	2022.11.22	폐문부재
14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3, 104동 5**호(신탄진동,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1단지)	56누98**	2022-11-05 20:57:56	신탄진동 771	2022.11.14	2022.11.16	폐문부재
15	박**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174번길 27, 2**호(상성동, 부전빌라)	81모04**	2022-11-14 11:29:17	오정동 44-1	2022.11.28	2022.12.06	폐문부재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6	권**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 4**-2, 2층(비래동)	01주35**	2022-11-07 08:57:05	비래동 535	2022.11.28	2022.11.30	폐문부재
17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136번길 13, 2동 2층 2**호 (상서동, 영구주택)	40조49**	2022-11-11 21:15:49	법동 284-1	2022.11.28	2022.11.29	이사불명
18	이**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34-7, 4**호(선화동)	대전80배21**	2022-11-12 11:29:35	법동 190	2022.11.28	2022.12.06	폐문부재
19	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6, 512동 13**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01내93**	2022-11-13 10:21:41	송촌동 494-1	2022.11.28	2022.11.30	폐문부재
20	㈜동양****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3**호(둔산동, 아너스빌)	14다73**	2022-11-15 00:26:21	비래동 124-1	2022.11.28	2022.12.05	폐문부재
21	이**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1440번길 46-7, 2**호(선화동)	10조54**	2022-11-24 07:14:03	중리동 418	2022.12.02	2022.12.09	폐문부재
22	서**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2길 67, 나동 4**호(북수동)	61더98**	2022-11-24 07:20:54	중리동 411-25	2022.12.02	2022.12.09	폐문부재
23	홍**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79-12, B동 1**호(스마트시티빌)	22수68**	2022-11-26 19:26:16	송촌동 534	2022.12.02	2022.12.06	폐문부재
24	유**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781-48, 2**호	47우17**	2022-11-28 08:36:06	비래동 534	2022.12.02	2022.12.06	폐문부재
25	이**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장터길 *	07하11**	2022-06-30 10:39:34	중리동 207-1	2022.12.06	2022.12.07	수취인불명
26	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23-7, 2**호(마포동)	38로99**	2022-09-25 07:44:44	중리동 418	2022.12.06	2022.12.09	폐문부재
27	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서로 36, 106동 6**호(중리동, 영진로알아파트)	95더06**	2022-09-25 13:31:32	중리동 275-14	2022.12.06	2022.12.08	폐문부재
28	안**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번길 18, 6층호(만년동)	283라12**	2022-09-30 10:39:25	석봉동 770	2022.12.06	2022.12.07	이사불명
29	이**	세종특별자치시 마음안로 13, 707동 13**호 (고운동, 가락마을7단지)	07호11**	2022-09-05 15:55:16	중리동 424	2022.12.06	2022.12.13	폐문부재
30	임**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 178, 106동 6**호(법동, 보람아파트)	24무76**	2022-10-03 22:13:27	송촌동 534	2022.12.06	2022.12.07	수취인불명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31	손**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경마을로 **-1, 1층(신탄진동)	41거61**	2022-10-06 11:06:00	덕암동 12-1	2022.12.06	2022.12.08	폐문부재
32	최**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4**-4(대성동)	36로91**	2022-10-08 13:36:27	비래동 3-2	2022.12.06	2022.12.08	수취인불명
33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9, 203동 3**호(법동, 주공아파트)	41저05**	2022-10-18 23:49:26	법동 284-1	2022.12.06	2022.12.08	폐문부재
34	임**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 178, 106동 6**호(법동, 보람아파트)	24무76**	2022-10-12 20:45:00	송촌동 523	2022.12.06	2022.12.07	수취인불명
35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90번길 21, 105동 18**호(법동, 선비마을아파트)	19오81**	2022-10-21 03:40:21	법동 440-4	2022.12.06	2022.12.08	폐문부재
36	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1748번길 45, 9**호 (비래동, 동부맨션)	165하19**	2022-08-22 10:06:40	송촌동 292-3	2022.12.06	2022.12.08	폐문부재
37	정**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다가말2길 70, 106동 4**호(다가동, 일봉산해피트리아파트)	22버42**	2022-08-30 09:30:51	신탄진동 116-1	2022.12.06	2022.12.09	폐문부재
38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9, 203동 3**호(법동, 주공아파트)	41저05**	2022-08-30 22:38:23	법동 284-1	2022.12.06	2022.12.08	폐문부재
39	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남길 59-1, 102동 1**호(도련일동)	88라67**	2022-09-01 08:36:20	오정동 44-1	2022.12.06	2022.12.09	폐문부재
40	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173번길 8, A동 5**호(덕암동, 금성백조아파트)	25거09**	2022-09-04 13:58:13	덕암동 60-5	2022.12.06	2022.12.08	폐문부재
41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412번길 45, 100동 2**호(비래동, 금성백조아파트)	21소07**	2022-09-14 22:22:55	비래동 18-34	2022.12.06	2022.12.08	폐문부재
42	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북로 46, 108동 4**호(법동, e편한세상)	277도79**	2022-09-18 07:20:34	법동 448	2022.12.06	2022.12.08	폐문부재
43	방**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1다길 52, 나동 B**호(광장동, 워커힌파크빌)	172조76**	2022-09-20 06:14:20	석봉동 770	2022.12.06	2022.12.09	폐문부재
44	신**	대전광역시 동구 동산초교로55번길 13, 2**호(홍도동)	199마18**	2022-07-28 10:14:12	송촌동 494-1	2022.12.07	2022.12.09	수취인불명
45	홍**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9번길 47, 4**1호(중리동)	357모47**	2022-08-01 14:40:46	중리동 462	2022.12.07	2022.12.09	폐문부재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46	임**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 178, 106동 6**호(법동, 보람아파트)	24무76**	2022-08-02 18:49:56	송촌동 495-10	2022.12.07	2022.12.09	폐문부재
47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북로 1*-2(석봉동)	84도46**	2022-08-15 07:07:07	오정동 44-1	2022.12.07	2022.12.09	폐문부재
48	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0번길 4*(전민동)	21수72**	2022-08-17 11:19:04	오정동 448-3	2022.12.07	2022.12.13	폐문부재
49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종리북로31번길 75-13, 1**호(종리동)	580445**	2022-08-24 11:41:29	종리동 418	2022.12.07	2022.12.09	폐문부재
50	(사)대전신체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북로 **-4(복용동)	73거89**	2022-08-26 23:42:37	법동 284-1	2022.12.07	2022.12.09	이사불명
51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90번길 21, 105동 18**호(법동, 선비마을아파트)	19오81**	2022-08-27 07:20:52	법동 440-4	2022.12.07	2022.12.09	폐문부재
52	이**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483번길 28, 2**호 (탄방동)	450441**	2022-08-30 08:13:02	송촌동 494-1	2022.12.07	2022.12.09	폐문부재
53	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6, 512동13**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07호58**	2022-06-20 07:03:57	송촌동 494-1	2022.12.07	2022.12.09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1201호

### 대철약수터 폐쇄 공고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먹는물을 공급하고자 1990년부터 대철약수터를 운영하여 왔으나, 국가 철도공단에서 추진중인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공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약수시설을 폐쇄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폐쇄일: 2022. 12. 15
2. 폐쇄시설: 대덕구 상서동 26. 대철약수터
3. 관련법령: 먹는물 관리법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4. 폐쇄사유: 약수터 시설물이 인입선로 사업대상에 포함됨.
5.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수질관리팀(☎608-6851). 끝.

##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 부여(안)에 대하여 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2. 12. 16. ~ 2022. 12. 30. (14일 이상)
2. 공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우리 구 관내 도로의 예비도로명 의견수렴
4. 의견제출

도로명 부여(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2. 30.(금)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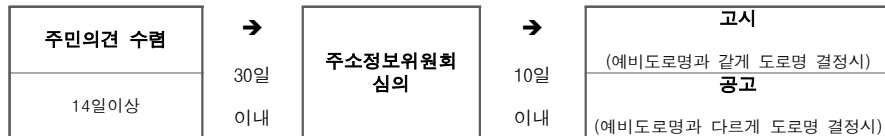
가. 제출방법: 우편, 방문, 팩스 등에 의견서 제출

나. 제출하는 곳: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정보과

1)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우편번호: 34443)

2) 문의전화: ☎ 042-608-5302 (FAX: 042-608-3829)

5. 도로명 부여 절차



끝.

## □ 도로구간 조사

조사	도로명	도로 위계	관할 구역	도로구간				기초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m)	폭 (m)	간격 (m)	시작	끝			
서	대화서로	로	대덕구	대화동 533-6	대화동 436-5	316	20	20	1	32	행정구역명(대화동)을 반영		

## □ 도로구간 현황도







- 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사. 자활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아. 자활기금의 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자.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사회복지과(전화: 042-608-6381, FAX: 042-608-3833,  
E-mail : do1312@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과 담당자 박금주(전화: 042-608-63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8호 및 제26조의5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활기금의 용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자활기금의 자금 대여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자금 대어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 센터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자금 대여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이자율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연 1퍼센트

2. 연체이자율: 연 15퍼센트

②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 기간 및 대여 한도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상환)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2. 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3. 대여받은 자금을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6조(위탁)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자금 대여 업무

2. 제5조에 따른 기금에서 대여한 자금의 상환 업무

제7조(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보전(補填)하여 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이 기금을 영 제26조의4제1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보전 대상 및 보전 비율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①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수립해야 하는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 조성 및 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이 지방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작성해야 하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른 결산서

2. 기금 운용 성과의 분석 결과 서류

3. 기금 결산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서류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영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생활지원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6급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 방법) 구청장은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예탁

2. 국채 등 공채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1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기금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활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맞게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골자)
  - 가. 조례의 제명에 맞게 시행규칙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나. 조례에 맞게 인용조항을 정비함(안 제6조, 제8조, 제12조 및 제16조).
  - 다.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11조 등).
4. 의견제출
  -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사회복지과(전화: 042-608-6381, FAX: 042-608-3833,  
E-mail: do1312@korea.kr)
-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과 담당자 박금주(전화: 042-608-63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지원하고자할”을 “지원하고자 할”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30%”를 “30퍼센트”로, “한다)제3조”를 “한다)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0%”를 “2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0%”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협의체”를 “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체의”를 “위원회의”로, “협의체가”를 “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을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3조제4호”를 “제7조제3항”으로, “협의체”를 “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대출 및 상환)”을 “(대여 및 상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금액은 기업당”을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자금 대여금액은 법인·단체·기업당”으로, “대출금액은 기업 당 1억원 이내로”를 “대여금액은 법인·단체·기업당 1억원 이내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장비설치”를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시설·장비설치”로, “자활기업은”을 “경우에는”으로, “임대자금은”을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여이율”을 “대여이자율”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제4항”을 “제5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연장신청서를(별지 제7호서식)”을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우에 한하여 협의회”를 “경우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제6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여금을 대여 할 때에는 대하 금리를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여이율”을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에서 대여금을 대여할 때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이차보전)”을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을 “제7조에 따른 대여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은 금융기관등”으로,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6조제3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을 “대여이자율에서 조례 제4조제1항의 이자율을 공제한 이자율”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이율”을 “이자율”로, “안”을 “아니”로 한다.

제13조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체의 위원장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를 “제9조”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운영기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2조(운영기준) ----- ----- ----- ----- 지원하고자 할 ----- ----- -----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
제3조(운영규모)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제3조(운영규모) ① ----- ----- 30퍼센트 ----- ----- 한다) 제3조----- -----.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여금의 대하)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여금을 대여 할 때에는 대하 금리를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여이율보다 1퍼센트 내에서 낮게 정한다.

제12조(이자보전)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6조제3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위원회 -----  
-----.

제11조(대여금의 대하) -----  
----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서 대여금을 대여할 때에는 조  
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  
-----.

제12조(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  
----- 제7조에  
따른 대여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은 금융기관등-----  
---- 대여이자율에서 조례 제4  
조제1항의 이자율을 공제한 이  
자율-----. -----  
---- 이자율-----  
----- 아니 --.

제13조(사업계획·예산 변경) --  
-----  
-----  
-----

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회의록 작성) 협의체의 위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사용하려는 -----  
-----  
-----  
-----.

제14조(기금정산) ① -----  
----- 1개월 -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  
-----  
-----.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장부의 비치) -- 제9조--  
-----  
-----  
-----.

1. ~ 3. (현행과 같음)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1208호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을 낮추고, 일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응시요건(자격증)을 국가직 공무원(「공무원 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일원화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함(안 제8조).  
나.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에서 전산 직렬을 삭제함(안 별표 4).  
다.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해양수산 직렬 6·7급 기준에 ‘산업기사’를 추가함(안 별표 4).  
라.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항공직렬 6·7급 기준에 ‘산업기사’ 및 ‘자가용조종사’를 추가함(안 별표 4).  
마.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시설직렬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6·7급 기준에 '산업기사'를 추가하고, 8·9급 기준에 '기능사'를 추가함(안 별표 4).

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조리직렬 6·7급 기준에 '산업기사'를 추가하고, 8·9급 기준에 '기능사'를 추가함(안 별표 4).

사.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에 전산직렬 자격증을 추가함(안 별표 5의2).

아.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을 신설함(안 별표 7의4).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 1.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08-6523, FAX: 042-608-3821, E-mail: hjoh121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운영지원과 담당자 오현정 (전화: 042-608-65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4, 별표 5의2 및 별표 7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 (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의2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 관련)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 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 가용조종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	지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 화, 항공사진, 지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 화, 항공사진, 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위생	위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 환경기능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 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 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 식, 양식, 복어)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데이터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응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케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증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원장크레인운전, 모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케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 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학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입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산림, 조경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입업종묘, 식물보호, 입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입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입업종묘, 입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입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입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입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입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입산가공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잡수
해양수산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산업기사 :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보 건	보 건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반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기 능 사 :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p>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p>
	대 기	<p>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p>
	폐 기 물	<p>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p>
항 공	일반항공	<p>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p> <p>기 사 : 항공</p> <p>산업기사 : 항공</p>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p> <p>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일반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수도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건 축	<p>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제시공</p> <p>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꾸집, 금속제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p>지 적</p> <p>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측 지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p> <p>기 사 : 안전, 교통</p> <p>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교통시설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p> <p>기 사 : 안전, 교통</p> <p>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도시교통설계	<p>기 술 사 : 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방재안전	방재안전	<p>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웹디자인</p>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제시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건설설비, 건축,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p>
방송통신	통신사	<p>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p> <p>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p>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통신기술	<p>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p>기 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송기술	<p>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p>기 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자통신기술	<p>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p>기 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조 리	조 리	<p>기 능 장 : 조리</p> <p>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p> <p>기 능 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p>
		<p>기 능 사 : 환경기능사</p>
위 생	사 역	<p>기 능 사 : 환경기능사</p>
시설관리	시설관리	<p>기 능 장 : 전기</p> <p>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기 능 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p>



2.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입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입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2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6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2급 직업상담사3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행정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데이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공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자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업	축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의	수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물품질관리사(7) 수의사(7)	수산물품질관리사(3) 수의사(3)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건	보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인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위생사(12) 직업의료정보관리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선특수(특수) 방사선기공(특수) 임상심리사1급(7)	인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위생사(8) 직업의료정보관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특수(8) 방사선기공(8) 임상심리사1급(3)	인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위생사(5) 직업의료정보관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특수(5) 방사선기공(5) 임상심리사1급(3)	인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위생사(2) 직업의료정보관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특수(2) 방사선기공(2) 임상심리사2급	인상병리사(1) 보건의료정보관리사(1) 방사선사(1) 물리치료사(1) 치과위생사(1) 직업의료정보관리사(1) 보건의료정보관리사(1) 안경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현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현약사(7)	약사(3) 현약사(3)	약사 현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수 질					
	대 기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운항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운항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운항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운항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운항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운항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운항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운항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 경쟁입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의4]

신규입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테 이 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응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일반기계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급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p> <p>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급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급형설계, 사출급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p>	
	농업기계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급형, 사출급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p> <p>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레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급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기계운전	<p>기술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급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능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급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급형설계, 사출급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급형, 사출급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트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레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급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철도교통안전관리자</p>
	조선	<p>기술사 : 조선</p> <p>기사 : 일반기계, 조선</p> <p>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p> <p>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 건조, 동력기계정비</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일반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p> <p>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전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p>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자력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p> <p>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p>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 료물질취급감독 자, 방사성동위원 소취급자(특수, 일 반),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 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p>
	금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일반화학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립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립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적용:가 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 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자격증 가산 비용 적용: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립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 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 산비용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 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 용 적용: 의사, 한의 사, 치과의사, 수의 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 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 건교육사 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 산비용 적용: 임상 병리사, 보건의료정 보관리사, 방사선 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 사, 영양사, 응급구 조사2급, 보건교육 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보건교육사3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방역		<p>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p>
식품위생	식품위생	<p>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영양사, 위생사</p>
의료기술	의료기술	<p>기술사: 방사선관리</p> <p>기사: 의공</p> <p>산업기사: 의공</p>	<p>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사</p>
환경	일반환경	<p>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위생사</p>
	수질	<p>기술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장수시설관리사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위생사, 장수시설관리사2급</p> <p>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장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대기	<p>기술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능장: 산림</p> <p>기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환경측정분석사(대기)</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위생사</p>
	폐기물	<p>기술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능장: 산림</p> <p>기사: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위생사</p>
시설	도시계획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능장: 건축일반시공</p> <p>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p>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건축사</p>
	일반토목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수도토목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건축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장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측지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설계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방재통신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전자통신기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농촌지도	농업기계		
공업연구	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전 자</p>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금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섬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p>화공</p>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화학		
	산업경영	<p>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p>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p>물리</p>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p> <p>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p>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p>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p> <p>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p>	<p>산업기사 자격증</p> <p>가산 비용 적용</p> <p>:영양사, 위생사</p>
		<p>작물</p>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농촌지도	농업		
농업연구	원예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p>	
농촌지도	원예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농업환경	<p>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p> <p>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p> <p>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p>	
	산업공중	<p>기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p>	
농촌지도	잡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생명유전	<p>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산업기사 : 종자, 식품</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농촌생활	<p>기술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p> <p>기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p>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농 공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제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조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제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조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기술사 : 축산, 식품</p> <p>기사 :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가축인공수정사</p>
농촌지도	축 산		
농지연구	임 업	<p>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p>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p>기술사 : 축산</p> <p>기사 : 축산</p> <p>산업기사 : 축산</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p>
		가축위생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p>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p>	
	수산자원		
어촌지도	어 촌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안전관리	기사 : 방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1207호

## 중리전통시장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중리전통시장 내 각종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중리전통시장 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중리전통시장 내 각종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CCTV 추가 설치
4. 설치장소: 중리전통시장 내 2대 추가설치

시장명	위 치	설치대수	비 고
중리전통시장	대덕구 중리로 76번길 일원	2대	방범(화재) 예방 및 시설물 관리

5. 촬영범위/시간: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중리전통시장 내 일원/상시
6. 예고기간: 2022. 12. 20. ~ 2023. 1. 10.(20일간)
7.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

